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고객번:	호 :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Ą	병명			서명 또는 인	
		<b>본인</b> (겸 담보제공자)	<b>T</b> .				•		담보제공자		- 4				
주식회사 신	한은행 앞	, a a— 10° 1/	주소							1	소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 주식회사 신한은형	J (이하 "은행"	이라합니	니다)과 아래의	의 조건에 띠	라 대출거래를	를함에 있어	H "은행 <sup>(</sup>	여신거래기	본약관	(가계용)"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 다음 각 조항	을 확약합니다.
<b>제 1 조 거래조</b>	<b>조건</b> 순(한도)금액, 이자 및	기여배사근여	이유 거	래바시 드 거	레조거스 □	나으라 간슨다	다 (거래변	l-JIol 스	느개ㄹ 되어	이느	겨오 으해지	외이 선명	으 드고 i	레다디느 "□"	'내에 "V" 표
시 합니다.)	:(U-L/D ¬, ¬/`\ >	( / L"  6 D-	7 ë, 71	9107071	네그런	764 689	9. (7191)	5 7 1 1	/ 기고 러디	I ML	01 2 0 7	인기 근 6	2 64	110-112	All 1 1
대 출 과 목								거래 구	분		l별거래	유	동성 한도	거래	한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							)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기	기간 끝니	사는 날 -		20	년		월 일	
	고정금리 (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가계	용) 제3조 제	2항 제1호 선택)		I간 끝나는 날					)9				)
대출이자율 등	<b>변동금리</b> (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가계	용) 제3조 제	2항 제2호 선택)		리부변동여신:		\w		+ ( 		, ※단,		대율은 제10조0	
	기타 (				무신금다	부변동여신 : 수신금리	+(		한글리부변동여( 라 글리는 저		리( / 의 금리우대			에 따라 적용됩 <b>가 적용된 금</b> 급	
		·년은 366일) <u>·</u>	로 보고 1	I일 단위로 계	산합니다.		,		, u-ic ^i	.,,,,	. 6-1 [-1]	= =(	, , ,	. 1 -101: 01	
이자및지연배상금															
계 산 방 법	이자율에 2%를 3. 연체가산금리는		<sub>합니다.</sub> 등 적용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중도상환대출금	<del>!</del> × (	)% ×	(대출잔여일 <del>:</del>	수/대출기긴	·) 단, 대출기간이	3년을 초과하	는 경우	대출기간은 3년	년으로 신	· · · · · · · · · · · · · · · · · · ·	여일수는 3년	에서 대출정	경과일수를 차감한	일수로 산정함. )
대 출 실 행 방 법	대출기간 시작! 대출기간 시작!			니다. )년 (	)(개)월	_	•				2구가 있는 금용도와 필			분할 실행합니	다.
	대출기간 끝나				/-1101	_	•				는 날에 전역			Platet	
	□ 대출기간 시작! (□ 원금 □:			)년 ( 분할상환합니다		동안 거치하고	, (	)년 (	)월	! (	)일부터	1 41 (	)ノガモ	_	영업시간 이후
상 환 방 법	대출금 중 금 동안 거치하고.	( )년	(	)월 (	원 )일부터	은 대출기간    -  매 (					금액은 (  자)을 균등	)년 ( 부한산화		<sup>)개월</sup> 자동	화기기 등
	대출실행 후 마	1월 대출개시	해당일에	. — .	. — .	기자)을 분할 성	상환합니다	: _			_			통한	적 장치를 계좌입금분은
	▲ 최종대출실행후 ※ 시장금리부변동			)년 ( }상환대출은 ·	)월 ( 금리변동 주	)일부터 우기에 따라 원					원금과 ( • 있습니다.	에자)을 분함	할 상환합	02	중 상환으로 되지 않을 수
이자지급시기	최초이자는 대					그 후의 이자는						)개월 이내	에 지급힘	니다. 있음	을 유의
이 사시 급시 기 및 방법	문할상환금, 원 은행이 정한 마									일]이 0	J일에 지 <del>그</del> 히	한니다		하시	기 바랍니다.
계 좌 번 호	대출금 입금 계좌			V1 DTE	=,	VI. 0TE			계 계좌번호		12-11 MBE	a-1-1.			
대 출 기 간	대출기간이 끝날 때	은행이 정한	기준에 띠	나라 기한연기	여부를 심사	하여 승인을 두	한 경우, 은	은행은 "7	기한연기 및	금리변	경"에 관하여	별도의 약	정서를 빈	지 아니하고 은	행이 정하는
자 동 연 기	단위로 상환기일의	연기 및 금리변	년경 처리	하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	된 대출금의 이	자율과 새로	문운 상혼	난기일 등을 '	연기 후	10일 이내0	에 유선 또는	: 서면으로	로 통지하기로 현	나다.
l -	변동내역, 중도상환해익	금 면제기일 안	사서비스	원함 원	하지 않음	모바일통제		•					)		
사전고지예정일 대출금리산정내역서 1	안내서비스			 원함 원	하지 않은	5일전 모바일 통자							)	본인은 귀행!	의 대출 모바
휴대폰번호					e-mail			i maii	OVIVIEI—	<b>□</b> / I <sup>c</sup>	· ·				통지서비스를 어 전자통지
	경우 대출이자 납입 <sup>6</sup> 호 또는 e-mail 주소기						너가 안내 됩	입니다.							약관에 동의
• 고객님의 부주의	로 <del>모든 6 시에 수요</del> 로 인한 잘못된 휴대 일 통지는 이자납입일	폰번호 또는 e-	-mail 주	소로 대출관련	정보가 통지	되어 발생되는								합니다.	
	글 용시는 이사답답을 내는 금리변동 당일 !							시근고시	12에진 인정	SIHL	1./				
② 대출만기일(분	할상환금 상환일 포	함) 또는 이자	납입일 등	등이 은행휴두	일인 경우	에는 그 기일을	을 다음 영역	법일로 협	합니다.		담당자	책인	사	결재권자	
				II											



####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 「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 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 변경 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 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의 유통수익률과 직전일의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 중 고객이 최 초 취급할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 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1) CD91일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니다.
    - (2)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경합니다.
    - (3)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 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 서 이자율은 6개월 (또는 3개월,1년)마다 변경합니다.
  -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 5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최종 잔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바용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 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 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 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 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1조의 대출기간자동연기에 따라 기한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연기 시점에서 은행 이 정한 SPREAD(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 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⑦ 채무자는 전 ⑥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 변경전 이자율 등 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 우에는 변경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⑧ 전 ⑦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니다
- ③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4 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 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 2. 「산여일수」는 중도상환 다음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 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환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경과일수」는 약정시작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 1.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 제 5 조 가계유동성한도대출에 대한 약정

## ①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등

- 1.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유동성한도대출기본계좌 (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2.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 는 것으로 합니다.
-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 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4.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 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 1.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 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2.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끝나 는 날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③ 대출(한도)금 사용제한

- 1. 은행은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겟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2,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3.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져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 제한을 해결하여 없애기로 합니다.

#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제 7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새로 씀·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 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	이 파시		(단위 : 원)									
	종별	<u></u>		(211-2)	) (				구 15	<u> </u>		우대	  윰
	증서(기)번호 또는 계좌번호 명의인(또는 위탁자)							(또는 체크) 신한카드(신) 결제계좌가 (	카드 관련 용/체크) 보유	) T			
	수익자 예금잔액 담보한도액				-	금		결제계좌가 5 _] 매월, [_] :	당행인 신한		□체크) 보유하고, ヨ) 이용실적	연 (	)9
	[Min(여신한도액×110%, 예금잔액×110%)] 신규일자					리 우	인단	금융 관련  넷뱅킹, 모: <del>:</del> 경우	바일뱅킹, 폰	뱅킹 등을 통하	배 이체실적이 확인	연 (	)9
	지급기일					대 항		금 또는 관	리비 이체				
	는 건축 후 담보로 제공하 로 제공하기로 하며, 은행여	표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4 기로 약정한 경우 매입 또는 건칙 이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 행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학	축한 해당 부동산 는 종류와 금액의	을 은행에 담5	1	(I) 목	( ※ 본인 ※ 납투		기체 등록건! 공휴일로 인:	만 인정	된 경우 익월 실적으	연 (	)9
	①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신탁 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는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여	이 약정에 따른 다	출채권 및 근저			ー 주 S20	래우대 / 러 )통장 등 보	  이디 / 미래 유	설계 / 김대리	/ 캠퍼스 /	연 (	)9
	이해합니다. 또한, 본인 및 근저당권을 행사할 = 시점까지 은행에 대하여 ②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은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 ( 에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잉 수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 가지는 항변사유로 채권 양수인이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 -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	i수인이 본인에 더 l당권의 양도통지 ll게 대항할 수 있 l와 이에 대항하기	배하여 대출채권  를 실제로 받을 기로 합니다. 지 않는 경우 근		대교아대하며()	\ \ \ \ \ \ \	H 거래실적에	의한 우대			연 ( 연 ( 연 ( 연 (	)9 )9 )9 )9
	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7 ③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경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④ 본인은 제1항의 양도와 된 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	보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투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 에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관련하여 매매, 상속, 증여 등에 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하을 확인합니다. 관련하여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다 다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 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	권을 더 이상 활 }. 의하여 담보부동 하다는 점을 이해 나는 점과 대출채 ᆌ기하지 않을 것은	용할 수 없음을 5산의 소유권을 하며 이에 이의 원 등의 양도일까 1을 확인합니다.	2 (3 2 (4) 1 (4)	금리우 로 금 <sup>5</sup> 하지 8 상기 2 제1조 <sup>6</sup> 거래약	-대항목( 라우대 조 남거나 유 조건을 기 게서 신청 당정서 제	≧건 이행 시 ∤지되지 않을 새이행하는 성한 대출 SI	우대기간은, 자동연장 됩 경우에는 경우에는 금 ////////////////////////////////////	대출실행일로 립니다. 만약, 미 우대받은 금리 리우대가 재주 지서비스에 때	부터 3개월간이며, 매월 제1항의 금리식 가 자동으로 인상도 석용됩니다. 인상된 라라 본인에게 통보 고정금리를 선택한 2	우대 조건(  며, 금리역 금리변동 됩니다. (단	을 이 인상 · 내역 <u>ナ</u> , 대
	를 서면으로 하여 이 의	<sup>‡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sup>	<mark>앞 안경우에는 본</mark>	인은 이 약정이	1 (		Ŧ				금리우대 적용 기준		
	의안 대술을 해시할 수 이내에 이를 은행에 알	있으며, 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리기로 하니다	앙노의 사실을 인	[날도무터 10일	=	대	출 실행	후 최초 37	H월	싵	l행시점 금리우대 직 전전월말 기준	용	
	10 조 금리우대 적용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 항목의	리 우대율이 적용	-되며 이후에는	<u>-</u>	3개월	이후	대출 실 1일~10일	인 경우		개월 실적으로 이행( 용시는 최근 2개월로		확인)
	해당 항목의 조건이 충족	즉되는 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 우 들으시고 해당항목의 "□" 내어	대율을 적용하기	로 확인합니다	<u> </u>				l인 경우 나대는 다음	금리 재산정일	전월말 기준 내월 실적으로 이행( (기한연장, 조건변경	등)까지로	
		구 분		우대율	711.44				우대 조건 중	속여무들 재신	난정하여 금리를 우r	#하기로 합	}YC
	금 □ 기타 ( 리 □ 기타 ( 우 위 상품을 보유하 대 만원 이상 유지	적금, □ 연금신탁, □ 청약저축, ) ㅏ고, □ 잔액, □ 평잔, □ 월불입		연 ( )%	0 0 0	]신용평	  출계약 점 하락   대출 실	제결 후 대 등 차주의 4 ]행에 중대한	신용위험, 상	환능력이 악호	는 증가, 연체 발생, / 사되거나 차주가 제공 들을 실행하지 않을 -	공한 정보의	의 내
	(I) MyShop Ca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r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라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함하)		연 ( )%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라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	을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 라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다 음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 산정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이	I출이자율이 인상됨 니다.	릴 경우 재무	본 인 겸 담보제공자			Q		전화번호			
	확인), 🗌 모바일 통지서	산정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0 산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담보제공자			(Q)	)	전화번호			
		하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정서 상	본인	<u>(</u> (겸 담토					서	명 또는 (	<u>ମ</u>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				담보제:	공자				서	명 또는 (	<u>ମ</u>
*		·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_			
	고객불만, 애로사항 상담 (소비자보호센터)	함 • 인터넷 : www • 우편 : (04513)						전화 : 080- 실딩)	-023-018	2	팩스 : 0505-177	' <del>-</del> 0013	
		HOLDLE	사 10년 내			OI		Τ.	108				





은행은 본인 및 담보제공자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_			고객번호	호 :						2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또는 인		$\exists \Gamma$		성명				서명 또 인	E	
		<b>본인</b> (겸 담보제공자)	<b>T</b> 1						함보제공자	<b>T.</b>						
주식회사 신	[한은행 <sub>앞</sub>		주소							주소						
본인 및 담보제공자는	는 주식회사 신한은형	] (이하 "은행"	이라 합니	니다)과 아래의	] 조건에 따라 <sup>1</sup>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은행여신	신거래기본의	<b>⊧관(가계</b> -	용)"이 적	용됨을 승	÷인하고, □	<b>가음</b> 각 3	조항을 획	확약합니다.
<b>데 1 조 거래2</b> ① 대출과목, 대한 시 합니다.)	<b>조건</b> 출(한도)금액, 이자 및	ļ 지연배상금 <sup>9</sup>	리율, 거	래방식 등 거	래조건은 다음	과 같습니다	ł. (거래방 <sup>,</sup>	식이 수 개	배로 되어 있	는 경우 등	은행직원	의 설명을	: 듣고 해 <sup>r</sup>	당되는 "	'□" 내	에 "V" 표
대 출 과 목							7-	l래 구분		개별거리	내	유동	성 한도거	化	ē	반도거래
대출(한도)금액	금							원 (₩								)
대출기간 시작되는 날		20	년	월	일		대출기	간 끝나는	: 날		20	년	월	<u> </u>	일	
	고정금리 (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가계	용) 제3조 제	2항 제1호 선택)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	<b>'</b> 지 연 (				)%	*(				)
대출이자율 등	<b>변동금리</b> (은행여	신거래기본약관(가계	용) 제3조 제	2항 제2호 선택)		·변동여신: (			ĺ	+(	)%		금리변동 주 금리 우대원		)조에서	) 정한
						여신 : 수신금리 + 	( )		금리부변동여신 : 단		)%	방법	및 주기에	따라 적	용됩니디	ł.
	기타 ( 1. 1년을 365일(윤	140 Secol)	9 H 7 1	이 다이크 게	사하다		,	* H =	금리는 제10:	소의 금리	I구내 <u>할</u>	건(	)%/	ト 적 <del>용</del> 된	금리압	니다.
이자및지연배상금	2. 지연배상금률은	제1조의 대출	이자율0			리고 연 (	)%	이내로 적	성용합니다. 1	단, 대출0	자율이	최고 지연	배상금률	이상인	경우에는	는 대출
계 산 방 법	이자율에 2%를 3. 연체가산금리는		합니다. ,를 적용 <sup>:</sup>	합니다.												
중도상환해약금	약금															
대 출 실 행 방 법	대출기간 시작! 대출기간 시작!			·니다. )년 (	)(개)월 이	내에 증빙서			본인의 지급 하여 은행이					<u>.</u> 할 실행	합니다.	
상 환 방 법	대출기간 끝나 대출기간 시작 ( 원금  대출금 중 금 동안 거치하고,	되는 날로부터 원금과 이자)을 ( )년	( ( : 균등 년 (	)년 (     변할상환합니다   일 (	다. 원은 I )일부터 마	 : 거치하고, 대출기간 끝 I (	( :나는 날에 )개월마다	)년 ( 상환하며 ( 원금	대출기간 끝 )월 ( 려, 나머지 다 금 □ 원금과	)   <del>출금</del> 액은	일부터 C	배 (	)개월미 )개	Market   Market	은행영업 마감 이희 자동화기 전자적 경	후  기 등
	대출실행 후 마 최종대출실행후 ※ 시장금리부변동	거치기간없0	l (	)년 (	)월 (	)일부터	매 (	)개월미	바다 ( □ 원금 액이 변경될	_		바)을 분할	상환합니	다. !	당일 중	<sup>파입금분은</sup> 상환으로   않을 수
이 자 지 급 시 기 및 방 법	□ 최초이자는 대를 분할상환금, 원 □ 은행이 정한 마	금 상환일 또는	- - 월적립	금 납입일에	지급합니다. [	대출기긴	같나는 날	날에 지급합	합니다.				지급합니	1-1.	있음을 유하시기 바	유의 바랍니다.
계 좌 번 호	대출금 입금 계좌	번호 :					X	등이체 7	계좌번호 :							
대 출 기 간 자 동 연 기	대출기간이 끝날 때 단위로 상환기일의															
대출이자납입일, 금리	변동내역, 중도상환해익	금 면제기일 안니	사비스	원함 원	하지 않음	모바일 통지사	에 스바	e-mail 통지		7 E (			)			
사전고지예정일 대 <del>출금</del> 리산정내역서	아내서비스			☐ 원함 ☐ 원		5일전 10							)		_	대출 모바
휴대폰번호					e-mail	-12 0 1		o mai o		T IV						서비스를 전자통지
• 등록된 휴대폰번 • 고객님의 부주의	.! 경우 대출이자 납입' 호 또는 e-mail 주소 로 인한 잘못된 휴대 일 통지는 이자납입일	가 신청하신 내용 폰번호 또는 e-	e과 일치 mail 주소	하는지 반드시 소로 대출관련 <sup>:</sup>	확인하시기 바 정보가 통지되0	랍니다. ㅓ 발생되는 된	문제에 대하	나여 은행은			라.		)			관에 동의
• 금리변동내역 안	내는 금리변동 당일 밤	발송됩니다. (유	농성한도	대줄은 결산일	! 다음 영업일에	발송됩니다	.)									

② 대출만기일(분할상환금 상환일 포함) 또는 이자납입일 등이 은행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기일을 다음 영업일로 합니다.



# 제 2 조 대출이자율의 변동

- ①「고정금리여신」이란 당행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신으로서 대출기간 끝나는 날까지 동일한 금리가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시장기준금리 또는 고시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가 변경 되는 여신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됩니다.
  - 1.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시장기준금리란 원화대출의 경우 대출실행일 및 금리 변경 적용일에 은행에서 고시하는 직전3영업일 평균 CD91일물,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 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의 유통수익률과 직전일의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 중 고객이 최 초 취급할 때 선택한 금리를 의미합니다. 각각의 시장기준금리의 변경은 아래의 변동 주기와 적용방법을 따르기로 합니다.
    - (1) CD91일물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3영업일간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유통수익률 종가의 단순 평균값을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3개월마다 변경합니다.
    - (2)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5년물 기준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 날로부터 매6개월, 1년, 2년, 3년, 5년이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 3영업일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고시하는 기간별 금융채AAA 종가의 단순평균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서 이자율은 6개월, 1년, 2년, 3년, 5년마다 변경합니다.
    - (3) 잔액기준 COFIX 금리, 신규취급액기준 COFIX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는 대출실행일과 그날로 부터 매6개월(또는 3개월, 1년) 되는 날 각각에 대해 직전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 있는 금리를 이자율로 적용하기로 합니다. 따라 서 이자율은 6개월 (또는 3개월, 1년)마다 변경합니다.
  - 2. 「시장금리부 변동여신」의 고시금리란 한국금융투자협회가 고시하는 CD91일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KIS채권평가와 한국자산평가가 금융채AAA의 금융채6개월물, 금융채1년물, 금융채2년물, 금융채3년물, 금융채 5년물 종가의 직전3영업일 단순평균금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고시하는 직전일 최종 잔액기준 COFIX, 신규취급액기준 COFIX 금리, 신잔액기준 COFIX 금리를 기준으로 1일부터 30년까지 기간별 금리에 자금비용을 감안하여 매일 산출하는 기간별 고시금리를 의미하며, 은행에서 매일 고시하는 해당 고시금리를 매일 해당잔액에 대하여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③ 「신)기준금리부 변동여신」이란 은행에서 고시하는 (신)기준금리의 변동으로 적용금리 가 변경되는 여신을 말하며, (신)기준금리란 은행의 평균조달원가에 적정비용과 마진, 업무원가 등을 더하여 산출되는 금리로서 은행에서 매일 고시되는 (신)기준금리가 변동 되는 날에 대출이자율이 변동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④ 「단일금리부 변동여신」이란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에서 고시하는 금리를 적용하는 여 신으로서 대출과목에 따라 약정기간 중 당행 또는 자금대여기관의 고시금리의 변동에 따라 금리를 변경하여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⑤ 「수신금리부 변동여신」이란 고객의 예금·적금·부금 등 수신상품을 담보로 하는 여신 으로서 담보로 제공된 수신상품의 수신금리가 변경된 경우 변경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1조의 대출기간자동연기에 따라 기한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기한연기 시점에서 은행이 정한 SPREAD(가산금리)로 변경할 수 있기로 하며, 은행은 연기된 대출금의 이자율과 새로운 상환기일 등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⑦ 채무자는 전 ⑥항에 의하여 통지된 이자율 등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일까지 변경전 이자율 등 을 적용하기로 하고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하는 경 우에는 변경전 지연배상금률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 ⑧ 전 ⑦항의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제 3 조 지연배상금

- ①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 원금과 이자를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그 다음 날부터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제 1항에 불구하고 예금·적금·부금 및 수익권담보대출은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한니다
- ③ 대출기간 끝나는 날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 7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제 4 조 중도상환해약금

- ① 본인이 은행에서 받은 대출금을 약정기일(기한연장된 경우 연장된 기일 포함. 이하 같음)전에 상환할 때에는 제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중도상환해약금은 중도상환대출금액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정한 요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며, 중도상환대출금액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 1, 「중도상환대출금액」은 약정기일 이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으로 하며 분할상환대출 인 경우 약정한 분할상환 기일전에 상환하는 대출금액을 포함합니다.
- 2. 「잔여일수」는 중도상환 다음날부터 당초 약정기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분할상환대 출금의 경우에는 각 할부금별로 계산하되 분할상환기일이 먼저 도래하는 순서대로 중도상화하는 것으로 합니다.
- 3. 「경과일수」는 약정시작일부터 중도상환일까지의 일수를 말합니다.
- ③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면제하기로 합니다.
  - 1. 대출금의 잔여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
  - 2.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 등으로 은행이 약정기일 전에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
  - 3. 은행의 필요에 의하여 약정기일 전에 예금 등과 상계하는 경우

# 제 5 조 가계유동성한도대출에 대한 약정

## ① 대출금 지급 및 상환방법 등

- 1, 이 약정에 의한 채무가 있는 때에는 유동성한도대출기본계좌 (이하 "모계좌"라 합니다.)에 입금된 자금(증권류의 금액은 결제될 때까지 이 자금에서 제외하며, 입금된 증권 등은 이 약정에 의한 채무의 담보로서 은행에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은 자동적으로 대출금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며 지연배상금, 미수이자, 대출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 2. 모계좌에 대해 그 잔액을 초과해서 지급을 요구하거나 정기적 지급금 및 각종요금 등의 자동납부 요구가 있는 때에는, 모계좌를 통해 대출금을 지급하거나 자동납부하 는 것으로 합니다.
- 3.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 모계좌에서 빼거나 대출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금에 더하 기로 하며, 한도초과로 이자 등이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원금에 가산(지급)되지 않은 이자(이하 "미수이자"라 합니다) 등은 한도초과된 다음 날부터 갚기로 하고 미수이자에 대하여는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 니다.
- 4. 미수이자가 발생한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제7조 제2항에 따라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을 상실하기로 하며, 그 때부터 대출금액에 대하여 정해진 율로 계산된 지 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가계당좌예금을 모계좌로 하는 대출특약

- 1.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이 약정에 의하여, 본인이 발행한 수표를 지급함으로써 은행에 대한 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또는 기 관)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지게 된 때에는 이를 대출금 채무로 삼아 이 약정에 따라 갚기로 합니다.
- 2. 모계좌가 가계당좌예금인 유동성한도대출의 경우, 은행은 수표의 지급거절에 따른 본인의 불이익이 현저하게 크다고 예상되는 등 필요한 경우, 본인이 대출기간 끝나 는 날 전에 발행된 수표를 대출기간 끝나는 날 이후에도 지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 여 생긴 대출금에 대하여도 이 약정이 적용됩니다.

## ③ 대출(한도)금 사용제한

- 1. 은행은 채무자가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것)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경우에는 대출(한도)금액에 불구하고 대출(한도)금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이 정한 자동이체 지급인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2. 은행은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본인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 3. 제1호에서 정한 사유가 해결되어 없어져 정상적인 여신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은 사용 제한을 해결하여 없애기로 합니다.

# 제 6 조 인지세의 부담

- ① 이 약정서 작성에 따른 인지세는 각 50%씩 본인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은행여신 거래기본약관(가계용) 제4조에 준하여 곧 갚기로 합니다.

## 제 7 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예금 등에 질권을 설정하고 은행 앞으로 그 증서(통장)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한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예금 등이 기한연장 · 새로 씀 · 갱신 · 분할 · 병합 · 증액 · 감액 또는 이자가 원금에 가산 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하며, 그 목적인 신탁이 기간 연장되거나 연체로 말미암아 자동연장처리된 경우에 있어서도 그에 대한 수익권 위에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은행은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가계용)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예금 등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예금 등	ار <del>س</del> ۱-			١ (				7 8			0-	-IIO
종 별								구 분			ᆉ	l월
증서(기)번호 또는 계좌번호						_ 신용(또는 처 신한카드						
명의인(또는 위탁자)				1 1				/제그/ 포ㅠ 행인 신한카!	= 뉴으			
수익자				1						□체크) 보유하고,	연 (	)%
				-		□ 매원	<u> </u>	8년 년년/1-  근 3개월(□	시요/□체= 시요/□체=	_/시교/ 고뉴이고, 키) 이용식전		
예금잔액				4		(		1년 6개월( 반원 이상		4) 410 2 7		
담보한도액					금누	\ 		- 10				
Min(여신한도액×110%,					- П	] 전자금융 관		OIHHƏI THH	키 드으 토=	바이테시저이 하이	연 (	)%
예금잔액×110%)]				1 1	우	된다첫행정, 되는 경우	포미	200, <del>1</del> 0	이 으트 수이	배 이체실적이 확인	린	) 70
신규일자				1 1	대		-1-					
지급기일	,			J	항	]공래 또는		비이제				
조 담보 · 보험					목	공과금 0						
	시가 없는 한, 이 약정에 의해 실	시해되 대추근 브도시	나스 메이 다	.	/ T \	□ 아파트(싱 본인 계좌 X			이저		연 (	)%
	기로 약정한 경우 매입 또는 건축									된 경우 익월 실적으	_ `	, .
					"	* ᆸᅮᆯᇬ 펼 로 인정	2 0	유글도 간에	그들 이제는	2 OT HE EHA		
: 세당아기도 아버, 근행역	] 요청하는 경우 은행이 동의하는 Lo 이번성 지기의 성건된기교 총	근 중규ザ 급액의 또	심에 사람이	r	-		717	1				
	<del>]</del> 을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합				L	글랜형 통장					~ /	١.
	신탁 승낙 및 피담보채권의 🤅					주거래우대			계 / 김내리	/ 캠버스 /	연 (	)9
본인은 은행이 국내 또는	- 해외에서 채권 유동화를 위해 ㅇ	이 약정에 따른 대출	채권 및 근저	1		S20통장 등					1	
	행의 승계인 또는 수탁인 등 제 3				금ㅣ[	] 기타 거래실	적에	의한 우대			1.	
	ll 대한 서면통지를 통해 채권 양			9	급리우대항목(Ⅱ)						연 (	)%
	- 있기로 하되, 대출채권 및 근저			2	죠   \						연 (	)%
	, , , , , , , , , , , , , , , , , , ,			-	항   \						연 (	)%
	관련하여 본인에 대한 서면통지			1	,볼,   \						연 (	)%
	은행이 약정에 의한 대출채권을			i L	(II) /	/					연 (	)%
	년 장기 두 장기 되던 데칠세년: 년채권의 확정에 따라 은행으로부				제1항의	금리우대 적용	은 I	H출실행일(기	한연장 또는	- 조건변경일 포함)	에 금리우	-대제!
	:세년의 복경에 떠더 근행으로구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			1		등의 사유로 변						
			一页	3						부터 3개월간이며,	이호 1개	원 다
	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A) 1 A =1 (							-, - , - , - , - , - , - , - , - , - ,		
	관련하여 매매, 상속, 증여 등에									가 자동으로 인상되		
	우 제3자 앞 채무인수가 불가능히	하다는 점을 이해하다	벽이에 이의	4						서 사항으로 단행적 적용됩니다. 인상된		
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년하여 대출조건 변경이 제한된디									ł라 본인에게 통보된		
지 후순위 대출이 제한된	가는 점을 이해하며 이에 이의를 제	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등 양쪽에 그	고정금리를 선택한 7	3 <del>~</del> ④ 양	'기운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여 은행이 채권양도통지 또는 근	!저당권의 피담보채 <sup>.</sup>	권 확정통계	] _	의해 급급	리우대가 적용	립니다	7.)				
를 서면으로 하여 이 익	정에 따른 대출채권 양도사실을	을 안경우에는 본인은	일이 약정이	1		구 분				금리우대 적용 기준		
의한 대출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약정을 해지할 경우 여	양도의 사실을 안날.	로부터 10일	]	대축	실행 후 최초	37#	웍	싵	행시점 금리우대 적	용	
이내에 이를 은행에 알려					""					전전월말 기준	.0	
) 조 금리우대 적용						대출	실항	일이	최근 37	개월 실적으로 이행C	벼부 확인	1
	리츠 시체가 시계 서대 최묘이	이 아메이지 게이다	머시중제	.	3개월 0	후   1일~1	0일년	'! 경우   <sub>(I</sub>		용시는 최근 2개월로 (		
	대출 실행시 아래 선택 항목의					대출	실항	[일이	,	전월말 기준		
	되는 기준에 따라 재산정되어 우							인 경우	최근 37	개월 실적으로 이행C	벼부 확인	
	들으시고 해당항목의 "□" 내에	∥ ∨ 표시하시고,	우대앙목 첫	į	그리이리	ᆙᆉᅜᄼᄑᄾᆌᅌᆘ	-L O	네노리이그:	기시시다	(기한연장, 조건변경	<b>に</b> \カlっ]	그 취급
우대율을 기입합니다				(4)								
	구 분		우대율	)			<b>ゴロ</b> ー	↑내 소선 중≃	i어무글 새산	난정하여 금리를 우다	i아기도 '	압니니
□ 예금 관련				제 11	조 대출	실행중단						
□ 저기에그 □	적금, 🗌 연금신탁, 🗌 청약저축,	□ ㅇ두서세그		은	행은 대출	즐계약 체결 후	대출	실행 전에 차	주에게 대출	· 증가, 연체 발생, 4	신용등급	또는 :
	곡급, □ 간급선칙, □ 경력시독, \		/ \0/	인	신용평점	하락 등 차주	의신	용위험, 상환	능력이 악회	되거나 차주가 제공	급한 정보	의 내-
	)	연	( )%							을 실행하지 않을 -		
니		911 (		1			", "	002 11	_ 01 112	22 20 1 1 20 2	, WD	
우 위 상품을 보유하	고, 🗌 잔액, 🗌 평잔, 🗌 월불입	/										
우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고, 🗌 잔액, 🗌 평잔, 🗌 월불입 	/		A1 12	조기	[ 목악사임						
다 우 위 상품을 보유히 대 만원 이상 유지 항 □ 급여이체 관련	고, □ 잔액, □ 평잔, □ 월불입 	,		A  12	' 소 기·	[ 목착사임						
다 우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항 □ 급여이체 관련 목 □ 당행 본인계좌5	고, □ 잔액, □ 평잔, □ 월불입' 			A1 12	· 소 / ৷	I 블라사임						
다 우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항 □ 급여이체 관련 목 □ 당행 본인계좌5			( )%		' 소 기 <b>는</b>	I 목박시영						
다 이 이 성품을 보유하다	2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D만원 이상 확인 연	( )%		' 소 기타	I 블라시잉						
다 이 이 성품을 보유하다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D만원 이상 확인 연	( )%		<u> </u>	I 블러시잉						
다 이 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O만원 이상 확인 역 확인(비대면			' 소 기타	· 즉착사임						
의 위 상품을 보유하면 안원 이상 유지 안원 이상 유지 당한 급여이체 관련 당행 본인계좌를 다 당행 본인계조를 당행 본인계조를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대출 금리상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D만원 이상 확인 확인(비대면 금리 산정내역서 관	<u></u> 년		· 소 / 타	r 즉착사망						_
의 위 상품을 보유하면 안원 이상 유지 안원 이상 유지 당행 본인계좌를 되어 전용상품에 한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급: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금리 산정내역서 관리, 단일금리부변동금	<b>난면</b> 리. 수신		· 소 / E	r 목삭사망			저희버충			_
위 상품을 보유하면 사용되었다. 무슨 이상 유지 보면 이상 유지 보면 이상 유지 보면 이상 유지 보면 이용 보인계좌를 되어 보인계좌를 하면 본인계좌를 보인계좌를 보인계좌를 보면 사용상품에 한 번통금리 대출은 상환을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른 무를 되었다면 보다를 되었다면 보다를 되었다면 보다를 되었다면 보다를 되었다면 보다를 되었다면 보다를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 나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	가만원 이상 확인 확인(비대면 금리 산정내역서 곤리, 단일금리부변동금 출이자율이 인상될 2	<b>난면</b> 리. 수신		· 소 / E	r 흑박사영	(Î)		전화번호			_
지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행 본인계좌로 당행 본인계좌로 당행 본인계좌로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 금리상 약당이 따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원 시장금리부당등라 이자들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 음을 충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	2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보다) 학원(비대면 보다) 전 관리 산정내역서 관리 분일금리부변동금 총이자율이 인상될 경	<b>난련</b> 리, 수신 령우 재무	본 인 겸 담보제공자	· 소 기타	r 흑각사망						
다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말원 이상 유지 당행 본인계좌로 당행 본인계좌로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금리 및 개백실적에 따라 부터이 증가할 수 있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산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 나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 음을 충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 장내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어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b>난면</b> 리, 수신 향우 재무 로고 이해		· 소 기타	r 흑각사당	(a) (b)		전화번호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한 □ 급여이체 관련 □ 당행 본인계조를 당행 본인계조를 전용상품에 한 전용상품에 한 전통금리 대출은 상환을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로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품실명서, 대출금리 신하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하였습니다.(대출금리 신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원 시장금리부당등라 이자들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 음을 충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b>난면</b> 리, 수신 향우 재무 로고 이해	본 인 겸 담보제공자	· 소 기타	r 흑각사당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 금리상 약원이 따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품실명서, 대출금리 신확인, □모바일 통지서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안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터통급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 음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작접고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라리 산정내역서 관리는 한국	<b>난면</b> 리, 수신 명우 재무 로고 이해 당우 화면	본 인 경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다 이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 금리상 약단이 증가할 수 있는 상품실명서, 대출금리 신화였습니다.(대출금리 신확인), □모바일 통지서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mark>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mark>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 사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 응의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 상대역서를 제공 받았으며 내용이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직접고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라리 산정내역서 관리는 한국	<b>난면</b> 리, 수신 명우 재무 로고 이해 당우 화면	본 인 경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b>. 소 기</b> 타					서당	명 또는	<u>oj</u>
위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한 □ 급여이체 관련 □ 당행 본인계조를 당행 본인계조를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로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품실명서, 대출금리 산확인, □ 모바일 통지서 다시 약정 관련하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안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터통급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 음을 충분히 설명듣고 이해하였습니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작접고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기사 전 기사	<b>난면</b> 리, 수신 명우 재무 로고 이해 당우 화면	본 인 겸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본인		· (공자)					명 또는	
위 상품을 보유하다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함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안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급 하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음을 충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 전세역서 제공방법(택1): □ 직접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중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기타 선정내역서 관리, 단일금리부변동금 하나 한 기타 한 기	리, 수신 위, 재무 교 이해 위, 화면 너 상	본 인 겸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겸 담보자	· (공자)						
지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한 □ 급여이체 관련 □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라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인), □ 모바일 통지서 다시러 약정 관련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중요 내용에 대하여 중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탁동급 아 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응 등 충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작접고 비스, □ e-mail 통지서비스) 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2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보증금 산정내역서 관리 산정내역서 관리 분일금리부변동금 충이자율이 인상될 경기다. 레 대해 충분히 설명되는 비대면 대출인 2 약정시였음.	보면 이해 유화면 보다 상	본 인 경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본인 제공됩니다	(겸 담보자 담보제공기 I	베공자) 다	ହା		전화번호	서당	병 또는	
다 이 상품을 보유하는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당 급여이체 관련 당당 본인계좌를 당당 본인계좌를 당당 본인계좌를 가장 수 있는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인), □ 모바일 통지서 다시라 약정 관련하다 다시라 약정 관련하다 당당 사용에 대하여 중요 내용에 대하여 대하여 중요 내용에 대하여 중요 내용에 대하여 대하여 중요 내용에 대하여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현,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탁동급 아이자들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응 등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 생대역서 제공방법택(1): □ 직접: 네스, □ e-mail 통지서비스) 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7 등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의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보증금 산정내역서 관금리 산정내역서 관금리부변동금 출이자율이 인상될 경기다. 레 대해 충분히 설명들교부(비대면 대출인 2 학자계용) 및 약정사였음. 등제기준에 따른 절. Shinhan.com →	보면 이해 유화면 보자를 거쳐 상	본 인 경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본인 제공됩니다 → 전자민원	(겸 담보자 담보제공기 H. 립	⊪공자) 자 • 전화 : 0\	ହା	023-0182	전화번호		병 또는	
지 상품을 보유하 만원 이상 유지 만원 이상 유지 당한 □ 급여이체 관련 □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전용상품에 한 변동금리 대출은 상환을 금리 및 거래실적에 따라 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상품설명서, 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였습니다.(대출금리 신학인), □ 모바일 통지서 다시러 약정 관련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중요 내용에 대하여 중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 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 함) 승위현,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탁동급 아이자들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응 등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 생대역서 제공방법택(1): □ 직접: 네스, □ e-mail 통지서비스) 여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7 등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인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보증금 산정내역서 관리 산정내역서 관리 분일금리부변동금 충이자율이 인상될 경기다. 레 대해 충분히 설명되는 비대면 대출인 2 약정시였음.	보면 이해 유화면 보자를 거쳐 상	본 인 경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본인 제공됩니다 → 전자민원	(겸 담보자 담보제공기 H. 립	⊪공자) 자 • 전화 : 0\	ହା	023-0182	전화번호	서당	병 또는	
위 상품을 보유하면 안원 이상 유지 안원 이상 유지 안원 이상 유지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당행 본인계좌를 전용상품에 한 전통금리 대출 금리상 약을 이 다음을 다 있는 악품설명서, 대출금리 신화였습니다.(대출금리 신화인), □모바일 통지서 여신거래 약정 관련하여 다하여 중 보안 사용에 대하여 중 보안 사용이 되었다면 보안 사용이 되었다면 보안 사용 보안 보안 사용 보안 사용 보안 사용 보안 사용 보안 사용 보안 보안 사용 보안 사용 보안 보안 사용 보안	로 급여이체가 되고, 이체실적 1회 50 e 추가 우대 기준 충족로 입금실적 1회 100만원 이상 함함) 승위험, 상품설명서 및 대출금 완료할 때까지 시장금리부변동금 나이자율이 인상될 수 있으며, 대응을 충분히 설명들고 이해하였습니는 정내역서 제공방법(택1) : □ 직접되니스, □ e-mail 통지서비스) 더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2통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보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	의만원 이상 확인 연확인(비대면 보증금 산정내역서 관금리 산정내역서 관금리부변동금 출이자율이 인상될 경기다. 레 대해 충분히 설명들교부(비대면 대출인 2 학자계용) 및 약정사였음. 등제기준에 따른 절. Shinhan.com →	보면 이해 유화면 보자를 거쳐 상	본 인 경 담보제공자 담보제공자 본인 제공됩니다 → 전자민원	(겸 담보저공가 남. 립 로2가, [	⊪공자) 자 • 전화 : 0\	ହା		전화번호	서당	병 또는	

# 개인(신용)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관련 고객 권리 안내문



## 1. 금융서비스 이용 범위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는 고객이 동의한 목적을 위하여만 수집·이용 및 제공됩니다. 필수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은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 위 사항에 동의하셔야만 [(금융)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 반면 선택적 정보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하여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2.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 요구권

- 가. 고객은 가입신청시 동의한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 또는 귀사의 [금융상품(서비스)] 소개 등 영업목적의 사용에 대하여 전체 또는 사안별로 [당행]에 처리의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1항,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 다만, ①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②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 제2항)
  - \*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한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 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7조 단서).
  - \* [(금융)거래] 관계를 설정하면서 동의를 한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내에는 신용정보의 제공 동의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제1항 단서)
- 나. 본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정지를 원하시는 고객은 아래의 매체를 통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인터넷접수: www.shinhan.com
    - 전화접수: 1544-8000서면접수: 당행 전 영업점
- 다. 위의 신청과 관련하여 불편함을 느끼시거나 애로가 있으신 경우 [당행]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 개인신용정보보호담당자 앞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당행] 고객 정보관리 · 보호인/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연락처 : 1544-8000
    - 은행연합회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상담실 1544-1040 • 금융감독원 정보보호담당자 연락처 : 민원실(국번없이) 1332

# 3. 고객 개인(신용)정보의 열람·정정·삭제 요구권

- 가. 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신용정보업감독규정 등에 따라 아래의 권리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당행] 홈페이지((www.shinhan.com)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동 권리를 행사하고자하는 고객은 [당행 각 영업점 앞]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삭제 요구권(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36조) [당행]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열람한 후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열람이 제한 또는 거절될 수 있음)
  - 신용정보 제공사실 통보 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 : 신용정보회사 등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받은 자.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제공한 신용정보의 주요 내용, 제공받은 자. 이용 목적 등의 통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요구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본인의 신용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및 본인의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하고, 정정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나. 고객은 본인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마이크레딧, 크레딧뱅크, 서울신용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를 통하여 연간 일정 범위내에서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개인신용평가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크레딧: 02) 1588-2486 / www.mycredit.co.kr
  - 크레딧뱅크: 02) 3771-1004 / www.creditbank.co.kr
  - 서울신용평가정보(주): 02) 846-5000 / www.siren24.com
  - 코리아크레딧뷰로(주): 02) 708-1000 / www.kcb4u.com

# 4.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보상

신한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 수령확인서

고객님, 신한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한은행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객님께서 계약하신 대출상품의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를 제공하였으며, 이에 고객님의 수령 여부를 확인 하고자 합니다.

아래 수령 서류 목록에서 수령하신 서류를 체크 또는 기재하시고, 아래 하단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령 서류 목록								
가계대출(여신)		기업대출(여신)						
대출거래약정서(가계용)		여신거래약정서(기업용)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가계용)		은행여신거래 기본약관(기업용)						
상품설명서 및 핵심설명서		상품설명서						
(		( )						
(		( )						
( )		( )						
( )		( )						
( )		( )						

본인은 위 상단 수령 서류 목록 내 계약서류 및 관련서류 일체를 확실히 수령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b>본인</b> (겸 담보제공자)	⑩ 또는 서명
담보제공자	⑩ 또는 서명

본 확인서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담당자	책임자	결재권자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가계용)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신한은행(이하 "은행"이라 합니다) 과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 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 매체에 비치 · 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교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1조 적용범위

이 약관은 주택자금 기타의 가계자금대출과 이에 준하는 가계부업자금대출, 지급보증 등 의 가계용 여신에 관련된 은행과 개인인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차주, 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보증·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은행은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상환을 요구할 수 있 습니다.

##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 ① 이자 · 보증료 · 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 · 계산방법 · 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은행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채무자가 해당사 항을 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할 때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은행이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 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은행은 채무 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 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진 때에는 은행은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야 합니다.
-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은행의 인상 · 인하는 건전한 금융 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 ⑤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 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 내에서 은행이 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 · 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 ⑥ 은행이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 · 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그 변경 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 든 영업점 및 은행이 정하는 전자매체 등에 이를 게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정 채무 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이 초래되는 경우에, 채무
- 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자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채무자가 그 해 지로 인하여 발생한 은행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 금률 등을 적용합니다.
- ⑨ 제1항 및 제2항 제2호에 의한 이자 등의 율과 관련하여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 자는 약정당시와 비교하여 신용상태의 현저한 변동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합리적인 근거를 서면 등으로 제시하고 금리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그 적 정성 여부를 성실히 심사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그 결과를 곧 통지 하여야 합니다.

# 제4조 비용의 부담

-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 1. 채무자·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에 대한 은행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그 해지도 포함)등을 말함]
  -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은행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 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이를 곧 갚지 아니한 때에는 은행이 대신 지급 한 금액에,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날짜 수만큼, 상법 제54조 (상사법정 이자율)에 의한 연 6%의 범위 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아야 합니다.

## 제4조의 2 대출계약 철회

- ① 채무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은행 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1항에 따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채무자가 대출금 전액에 대 한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채무자의 철회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 ※ 위 4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 제4조의3 위법계약의 해지

채무자는 은행과 위법계약을 체결한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4조의3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할 때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은행과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

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은행 으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6조 담보의 제공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은행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 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 제7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 터의 독촉·통지 등이 없어도, 채무자는 당연히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채무자가 돈을 대신 갚아준 사람 (또는 기관)에게 부담하는 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할 의무를 집니다.
  - 1.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 ·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u>지가 발송된 때</u>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u>다만, 담보재산이 존재하는 채무의 경우에는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때</u> 에만 가압류를 사유로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합니다.
  -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호의 모든 예치금 기타 은행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발송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 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3.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 있는 때 4.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 5. 회생 ·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의 신청이 있는 때
- 6.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 연히 해당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은행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다 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u>통지하여야 하며</u>, 기한의 이익상실일 7영업일전까지 <u>통</u> 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u>채무자는 실제</u>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u>기</u> <u>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u> 갚아야(또는 이행)할 의무를 집니다.
  - 1. 이자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이상 연속 하여 지체한 때
- ③ <u>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u> 발생하여 은행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은행은 <u>서면으로</u> 변제, 압류 등의 해결하여 없앰,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u>상실하여, 곧 이를</u> 갚 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은행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또는 제4 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체납처분이 있는 때
  -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u>경매개시가 있거나 가압류 통지가 발송되는 경우로서</u>,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5.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 중 연체정보, 대위변제(채무자를 대신하여 이해 관계인이나 제3자가 채무를 갚아주는 행위)·대지급(채무자가 기일내에 돈을 갚지 못한 경우 지급보증을 한 은행(또는 정부)에서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겠정보, 부도정보, 관련인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로 등록된 때 4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은행은 서면으
- 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한 날짜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은행이 정한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채무자는 은행에 대해 해당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2. 담보물에 대한 화재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은행을 해할 목적으로 담 보물건을 양도하여 은행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 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해당주택의 담보제공을 지체한 때, 기타 은행과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3. 보증인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상당한 기간내에 보증인을 교체하지 아니한 때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은행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은행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은행이 분할상환금 · 분할상환원금과 이자 · 이자 · 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 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은행이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 터 부활됩니다.
- ※ 위 7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 제8조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상실의 연대보증인에

- ① 제7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상실될 때, 은행은 제1호 · 제4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은행이 인지한 날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② 제7조 제3항과 제4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 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 리는 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7조 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 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은행은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5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 여야 합니다.
- ④ 제7조 제2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은행은 기한의 이익이 상실 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제9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아무런 배상금 부담 없이,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 자는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0조 은행으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제7조에 의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경우, 은행은 채무 자의 그 채무와 채무자의 은행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예치금 기타 채권(이하 "제 예치금 등" 이라 합니다)과를 상계할 경우, 은행은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제 예치금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제 예치 금 등의 명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계를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보증인·담보제공자의 정 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 의 계산기간은 은행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 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예금 등의 이자율은 해 당 예금 등을 가입할 때 은행과 약정한 이자율로 합니다.

#### 제11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은행에 대한 채무와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계한 예금 기타 채권의 증서 '통장은, 채무자' 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 을 하여, 지체 없이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채무에 대한 이자·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 채무자의 상계통지가 은행에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은행에서 정한 바에 따르 며, 수수료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제12조 어음의 제시 · 교부

-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상 계를 할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상계와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은행은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 ② 은행이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 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 1. 은행이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 2. 은행이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 3. 교통·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하다고 인 정되는 때
- ③ 제10조,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하고도, 곧 이행하여야 할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은행은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 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그 대금으로, 제13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 습니다.
- ④ 은행이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일부변제 · 일부상계와 충당

- ① 채무자가 변제하거나, 은행이 제10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에,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은행은 채무자에 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
- 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 는 바에 따릅니다.
-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 는 모든 예치금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의 지정이 이미 연 교기 및 다이 보는 중에에 중하기도 됩니다. 이 경구, 세구자의 시장에 이미 원체된 채무를 제쳐놓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에, 또는 무담보 채무를 제쳐놓고 유담보 채무에 충당하는 등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일 때에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은행이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④ 채무자가 제11조에 의한 상계를 할 경우,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 무자가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순서에 의하여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 다. 그러나, 채무자가 위와 같은 지정을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르기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의한 채무자의 지정이 은행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인 때에 는, 은행은 지체 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이의 발송 후 14일 이내에, 제3항에 준하여 채 권보전상 알맞다고 인정되는 채무로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사고의 처리

① 채무자가 발행·배서(어음 뒷면에 어음 양도, 보증 등 어음거래의 취지를 적고 서명 또 는 기명날인(이름을 기록하고 도장을 찍는 일)을 하는 행위) 등을 한 어음 또는 채무자 가 은행에 제출한 모든 증서 등이 불가항력 · 사변 · 재해 · 수송도중의 사고 등 은행 자

- 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손상·멸실 또는 늦게 도착한 경우 채무자는 은행 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은행의 장부·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은행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 2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 · 손상 · 멸실의 경우에 은행의 요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 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은행이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 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 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은행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 ④ 은행이 어음이나 모든 증서 · 신고서 등 서류의 도장을 찍은 모양 · 서명을, 채무자가 신고한 인감 · 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처리한 때에는, 그 서류나 도장에 관하여 위조·변조·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 해는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 제15조 신고사항의 변경

채무자가 이미 신고한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인감 · 서명 등에 변경이 생긴 때에는, 지 체 없이 그 변경 내용을 은행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6조 자료의 성실 작성의무

채무자는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은행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합 니다

## 제17조 통지의 효력

- ① 은행이 채무자가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 의 우편배달기간이 완전히 지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② 채무자가 제15조(신고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 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 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 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내용증명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은행이 채무자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제18조 회보(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줌)와 조사

- ① 채무자는 은행이 채권보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요구하는 때에는 부채현황,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지체없이 문의에 대한 답을 알려주며, 또
- 고 이 전에 전혀 하나 하고 하는 다 하는 이 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은행이 그에 관하여 조사하고자 할 때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채무자는 채무자 및 보증인의 신용상태나 담보의 상황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 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은행의 요구가 없더라도, 곧 은행앞으로 이를 통지하 여야 합니다.

# 제19조 이행장소 · 준거법

-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 로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된 본점·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 로 합니다.
- ② 채무자가 내국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 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 제20조 약관·부속약관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거나 부속약관을 채무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 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회사의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일
  - 로부터 7일간 변경내용을 게시합니다.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 1. 합성 가능 수는 가능한 역사 기관을 받아되는 하고 2.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유리하거나 기존 채무자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 3.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의 경우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채무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등 채무자와 사전에 합 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 전까지 개별통지합니다. 다만, 기존 채무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
- 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은행은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채무자가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
- 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채무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 위 20조의 밑줄 친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상이합니다.

# 제21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약관에 터 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은행과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타인 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물건의 가치 범위액 내에서만 채무 변 제의 의무가 있는 사람)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 울러 은행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 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은행이 본점 · 지역본부 또는 다 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의 관할을 변경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 러 변경된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거래처는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거래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약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